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9조 (계약목적)

기관과 수급자, 그리고 보호자가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 등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10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.
-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- ③ 계약기간만료 시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.

제11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-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, 계약당사자(기관주체, 서비스이용자, 서비스 보호자), 인적사항, 계약기간, 계약의 변경, 계약의 해지,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, 배상책임, 이용규정, 개인정보보호의무, 계약사항 확인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,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.
-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수급자 본인이 치매,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

제12조 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- ① 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. [개정 2026.1.1.]

분 류		금액(원)
라-1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장기요양 1등급
		장기요양 2등급
		장기요양 3등급
		41820
		38720
		35740

		4등급	34120
		장기요양 5등급	32490
		인지지원등급	32490
라-2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장기요양 1등급	56060
		장기요양 2등급	51930
		장기요양 3등급	47940
		장기요양 4등급	46300
		장기요양 5등급	44650
		인지지원등급	44650
라-3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장기요양 1등급	69730
		장기요양 2등급	64590
		장기요양 3등급	59640
		장기요양 4등급	58010
		장기요양 5등급	56360
		인지지원등급	56360
라-4	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장기요양 1등급	76820
		장기요양 2등급	71160
		장기요양 3등급	65750
		장기요양 4등급	64090
		장기요양 5등급	62460
		인지지원등급	56360
라-5	13시간 초과	장기요양 1등급	82370
		장기요양 2등급	76310
		장기요양 3등급	70500
		장기요양 4등급	68860
		장기요양 5등급	67240
		인지지원등급	56360

② 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,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[개정 2019.1.15]

1.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. [개정 2018.3.27]

1.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

2. 소득·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. 다만, 도서·벽지·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3.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

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비용으로 구성된다.

1. 비급여비용은 식사재료비로 1식 2,500원, 간식비 1회 500원으로 월간 이용한 횟수로 산정한다. [개정 2025.12.1.]

제13조 (급여비용 청구)

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.

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. [개정 2026.1.1.]

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월 한도액 (원)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.

③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

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

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(이하 "미이용일 급여비용" 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1.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,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.

2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, 대체공휴일(이하 “공휴일” 이라 한다)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(월~금요일)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%(제12조 ①항의 ‘라-3’의 50%를 한도로 함)를 산정한다. [개정 2022.1.1.]

제14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)

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신원인수인의 권리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

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,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3.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4.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
5.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6.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7.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8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② 신원인수인의 의무

1.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,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
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
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4.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

5.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의 의무

제15조 (계약의 해제)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2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3.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‘갑’, ‘을’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

4.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,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,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

5.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
6.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7.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,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
8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